유학생 창업지원 센터 운영규정

제 정 2018. 1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 교육을 위해 설치하는 **「유학생 창업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 통할) 센터의 제반 업무는 국제교류처장이 총괄한다.

제3조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국제교류처 처장이 겸임하거나 국제교류처 처장이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센터 근무 정원 및 근무형태(상근, 시간제 등) 등에 대해서는 국제교류처 처장이 본교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분장업무) 센터는 제1조에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지도 수업을 개설하여 창업교육을 진행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좋은 창업 분위기를 형성한다.
2. 창업 대회를 개최하여 창업 방안을 수집하며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양상한다.
3. 교수를 초청하여 창업 상담을 진행하며 다양한 형식으로 외국인 유학생에게 전문적으로 창업 지도를 제공한다.
4. 기타 국제교류처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제5조(세칙) 국제교류처 처장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본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